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

본 감사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201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3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.

정기감사는 내부사정으로 추후에 하기로 하고, 회계법인에게 내부견제제도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,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하였습니다. 검토결과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.

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, 중요한 업무에 관한 학원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.

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2013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3년 04월 12일

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

감사 김재형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57호)

감사 류필운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관재과장

성명 강정수

[별지 제9호 서식]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

본 감사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명대학교의 2013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검토하였습니다.

정기감사는 내부사정으로 추후에 하기로 하고, 회계법인에게 내부견제제도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,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하였습니다. 검토결과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.

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, 중요한 업무에 관한 학원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.

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동명대학교의 2013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3년 04월 12일

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
감사 김재형 *김(인재)형*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57호)
감사 류필윤 *류필윤*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사무처장 *사무처장*
성명 최인수 *최인수*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